범죄 피해자 및 고소인의 소송상 권리 안내서

범죄 피해자 및 고소인의 소송상 권리에 관한 안내서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한 후,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법원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에 따라 심리를 진행합니다. 당신이 범죄 피해자인 경우, 법원에서의 심리 절차 중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법원의 개인정보 보호】

형사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나 방청객이 귀하의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도록 최대한 보호합니다. (형소법 제 271 조의 2 제 1 항 참조)

2.【청각·언어 장애 또는 언어 장벽이 있는 경우 법원의 지원 요청 가능】

청각, 언어 장애가 있거나 언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 또는 기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 전에 법원에 연락하면 통역이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동반 가능】

법정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3 촌 이내의 친족, 보호자, 가족, 의사, 심리상담사, 지도교사, 사회복지사 또는 신뢰하는 사람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형소법 제 271 조의 3 참조)

4.【증거보전 신청 가능】

제 1 심 법원에 사건이 기소된 후, 첫 심리기일 전까지 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소법 제 219 조의 4 제 2 항 참조) 피해자도 검사를 통해 법원에 서면으로 증거보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증거의 소실이나 사용 곤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양형 협의에 대한 의견 진술 가능】

법원 심리 중, 검사와 피고인이 양형 협의를 진행할 경우, 검사는 귀하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귀하는 협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형소법 제 455 조의 2 제 1 항 참조)

6.【가림 장비 사용 요청 가능】

법정 출석 시 피고인 또는 방청객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거나 화가 나 감정 조절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해당 상황을 알리면 법원은 사건의 정황 및 귀하의 심신 상태, 당사자 및 변호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가림막, 영상장비 등을 사용한 적절한 분리 조치를 할지 결정합니다.

7.【증거조사 신청 가능】

사건과 관련된 증거의 조사를 법원에 요청하고 싶은 경우, 검사를 통해 법원에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소법 제 163 조 제 4 항 참조)

8.【조정 절차로의 회부 신청】

피고인과 조정을 원할 경우, 심리 중에 법원에 그 의사를 표명하면 법원은 피고인 및 귀하의 의사,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 절차로 회부할지를 결정합니다. (형소법 제 271 조의 4 참조)

9.【회복적 사법 절차 신청】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 피해자,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이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며,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책임지도록 하며, 피해자의 감정적 상처와 실질적인 손해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법원에 회부를 신청할지 여부는 귀하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신청하고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 중재자에 의해 회복 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소법 제 271 조의 4 참조)

10.【직접 또는 서면으로 의견 진술 가능 (양형 포함)】

귀하 또는 가족은 법정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그 의사를 존중합니다. (형소법 제 271 조 제 2 항 참조) 또한 양형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형소법 제 289 조 제 2 항 참조)

11.【검사를 통한 의견 진술 가능】

법원 심리 중 의견이 있을 경우, 검사를 통해 법원에 의견을 전달하여 재판부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12.【추가 민사소송 제기 가능】

제 1 심 또는 제 2 심 형사 사건에서 변론 종결 전까지, 피고인 및 민법상 배상 책임이 있는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추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의 결정으로 민사 재판부로 이송되며, 무죄 면소 소송기각 등의 판결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 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형소법 제 487 조 및 제 503~505 조 참조)

13.【증인으로 출석 시 비용 청구 가능】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경우, 원칙적으로 그날 일당 및 여비가 지급됩니다. 당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신문 후 10 일 이내에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 전 서면으로 여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소법 제 194 조 참조)

14.【판결에 대한 항소 요청 가능】

판결에 불복할 경우, 검사 항소 기간 내에 이유를 제시하여 검사에게 항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소법 제 344 조 제 3 항 참조)

15.【'피해자 형사소송 정보 제공 플랫폼' 이용 가능】

사건이 법원에서 심리 중인 경우, 법원에 사건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법원이 이메일로 실시간 사건 정보를 제공하며,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양식과 유의사항은 아래 URL 및 QR 코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reurl.cc/6a1Nay

16.【범죄 피해 보상금 신청】

타인의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상을 입은 피해자 및 성적 자율권이 침해된 피해자(아동·청소년 포함)는 법에 따라 '범죄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및 첨부 서류는 법무부 홈페이지, 각 검찰청 또는 범죄피해자보호협회(0800-005-85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7.【고소인의 권리】

(1)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문서 열람 가능 :

재판 중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인이 법원에서 기록과 증거를 열람, 복사할 수 있습니다. (형소법 제 271 조의 1 제 2 항 참조)

(2)대리인을 통한 의견 진술 가능 (형소법 제 271 조의 1 제 1 항 참조)
(3)판결에 대한 의견을 검사에게 전달 가능 (형소법 제 314 조 제 2 항 참조)

18.【더 많은 정보 확인】

피해자의 일반 보호 및 소송 참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또는 QR 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reurl.cc/a9ogW4